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021. 07

# Contents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현황 .....	03
2. EU 기후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Fit for 55') 주요 내용 .....	05
3.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	06
4. 탄소국경조정제도 부속서 주요 내용 .....	13
5.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 영향 .....	19



##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현황 (1/2)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하여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관세의 일종입니다.

“

If countries have similar carbon pricing to Europe, the tariff would also not apply. But countries with high climate ambition, like the US and the UK, are not automatically exempt.

”

- Euractiv, 2021.06.03 -





##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현황 (2/2)





## 2. EU 기후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Fit for 55') 주요 내용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30 기후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Fit for 55')은 EU의 배출권거래제(EU's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를 강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결정	규정 강화	목표 설정	지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항공분야 배출권거래제 강화</li><li>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 배출권거래제 신설</li><li>에너지조세지침 개정</li><li>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승용차 및 승합차 탄소배출 규제 기준 강화</li><li>대체연료인프라규정 개정</li><li>항공운송 연료 기준 마련</li><li>해상운송 연료 기준 마련</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노력 분담규정 개정</li><li>토지 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삼림 규정 개정</li><li>재생에너지지침 개정</li><li>에너지효율지침 개정</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신설 및 현대화/혁신 기금(Modernisation and Innovation Funds) 확대</li></ul>

\* Source: EC COM(2021) 550 final, p. 3.



### 3.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1/7)

#### 대상, 적용범위 및 시기

- 적용대상: 모든 비EU 국가로부터의 CBAM 부속서 I에 열거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의 수입에 적용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기간(전환기간에는 보고의무만 존재)
- 수입업자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CBAM 보고서(CBAM report)를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함
- CBAM 보고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됨
  -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단위별 각 제품의 총량
  - 각 제품의 실제 탄소배출량
  - 각 제품의 간접적인 실제 탄소배출량
  - 수입 상품의 원산지에서 부과되는 탄소가격\*

\* 탄소가격(Carbon Price): 탄소배출에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으로 탄소세 등 세금(Tax), ETS 하에서의 배출허용량(Emission Allowance) 등을 의미함

#### 집행위원회의 검토보고서

- EU 집행위원회는 CBAM 규정을 간접배출량과 부속서 I 재화 외의 재화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함
- 전환기간 종료 전까지 EU 집행위원회는 EU 의회에 CBAM 규정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며 해당 보고서에는 범위 확대 가능성(석유화학, 운송 등)을 타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가능한 경우 검토보고서와 함께 입법안도 함께 제시될 수 있음



### 3.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2/7)

#### EU ETS 무상할당제도 고려

- 부속서 I의 업종에 부여되는 무상할당을 고려하여 제출(반환)될 CBAM 인증서가 계산되어야 함

##### \* CBAM과 EU ETS

- EU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탄소집약적 산업에 무상배출권을 부여하였으나 탄소중립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바 무상배출권 제도는 CBAM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폐지 예상
- 이에 따라, CBAM 인증서 거래가격은 무상배출권을 고려한 EU ETS 거래가격을 반영함
- 무상할당 대상품목의 경우에는 CBAM 인증서 가격을 감면해 줄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추후 이행법률에서 결정될 예정임

#### 수입자 등록

- 부속서 I의 재화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당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된 수입자, Authorised declarant, “수입자”)
- 신청 내용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됨
  - 이름, 주소, 연락처
  - EORI 번호(세관등록번호)
  - 주요 사업
  - 과거 3개년 재무정보
  -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EU 내 수입품의 양 및 금액 등
- 수입자는 언제든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관련 당국에 알려야 함
- 신고서 양식 및 관련 당국의 추후 절차는 추후 이행법률에서 결정될 예정임



### 3.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3/7)

#### CBAM 신고

- 매년 5월 31일까지 수입자는 CBAM 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CBAM 신고서; CBAM declarations)
  - 직전 연도의 수입품의 총량
  - 직전 연도의 수입품의 총 **탄소배출량**
  - 수입품의 총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 개수
- CBAM 인증서란 전자적 형태의 인증서로서 수입자가 수입하는 수입품의 1톤당 CO<sub>2e</sub>\*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의미함

\* 1톤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이산화탄소 환산량

#### CBAM 인증서 제출

- 매년 5월 31일까지 수입자는 검증된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함
- CBAM 인증서 개수 산출 시 수입품의 원산지국에서 납부한 탄소 가격을 차감할 수 있음
- EU는 이러한 원산지국의 탄소가격제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국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추후 이행법률에서 결정될 예정임
- 수입자는 인증서 제출일로부터 4번째 연도말까지 관련 증빙, 납부 증빙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수입자는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4번째 연도말까지 탄소배출량 계산 근거를 보관하여야 함



### 3.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4/7)

####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및 검증

- 전기 외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은 부속서 III에 규정된 산정방식에 따라, 실제 배출량에 기초하여 결정됨
- 수입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은 단순재화의 경우 수입품의 단위당 직접배출량으로, 복합 재화의 경우 수입품의 단위당 직접배출량 및 투입된 모든 원재료들의 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
- 기본적으로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실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기본값(default values)으로 산정함
-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동일하게 CBAM 인증서 개수를 산출하기 위한 탄소배출량도 독립된 검증업체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함
- 수입자는 수출업자가 공개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사용하여 검증받을 수 있음
- EU ETS 하에서 공인된 검증인은 CBAM 하에서 공인된 검증인으로 간주됨

#### EU 집행위원회 역할

- EU 집행위원회는 중앙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CBAM 구매, 보유, 제출, 재구매 및 취소 등을 독립 거래 로그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국이 CBAM 규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국의 목록을 EU Official Journal에 게재함
- EU 집행위원회는 등록된 수출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며 수출업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음



### 3.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5/7)

#### 관련 당국 역할

- 각 EU 국가는 '관련 당국(competent authority)'을 지정하여 CBAM을 관리하도록 함
- 관련 당국은 국가별로 CBAM 등록국(Registry)를 설립하여 CBAM 인증서를 관리함
- 수입자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CBAM 등록국에 저장되며 각 수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CBAM 인증서의 개수, 가격, 매입일, 제출일, 재구매일 및 취소일 정보가 저장됨

#### 수입업자의 CBAM 등록

- 다음의 경우에 관련 당국은 수입자의 신청을 승인함
  - 신청일로부터 5년 전까지 수입자가 관세, 세법이나 형법을 어긴 사실이 없음
  - 수입자가 본인의 재정 및 영업적 능력으로 CBAM 규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
- 승인된 경우 관련 당국은 각 수입자에 CBAM 계정을 부여함
- 수입자는 CBAM 계정을 통하여 CBAM 인증서를 제출함
- 설립된 지 2년 미만인 수입자의 경우 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CBAM 인증서 최대 개수를 산정하여 보증금액을 산정함
- 보증은 EU 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은행보증 및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함



### 3.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6/7)

#### 수출업자의 CBAM 등록

- EU 집행위원회는 EU 외 지역의 수출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정보를 중앙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음
- 신청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됨
  - 수출업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 각 탄소배출이 일어나는 공장의 정확한 주소
  - 지역 및 주요 사업
- 등록된 경우 유럽 집행위원회는 수출업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은 통지일자로부터 5년동안 유효함
- 등록된 수출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
  - 탄소배출량 계산
  - 계산된 탄소배출량의 검증
  - 검증보고서 및 탄소배출량 계산에 사용된 정보를 검증일로부터 4년간 보관

#### CBAM 신고적정성 검토

- CBAM 신고서가 제출된 연도로부터 4개년 연도말까지 관련 당국은 CBAM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음
- 검토 내용은 관세당국에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CBAM 신고서를 검증하는 것을 포함함
- 신고되지 않은 경우 관련 당국은 4개년 연도말까지 제출하여야 할 총 CBAM 인증서 개수를 산출하여야 함
- 인증서를 과소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에 통지하고 1달 이내 CBAM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수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과다 제출한 경우 관련 당국은 즉시 수입자에 해당 연도의 평균 인증서 가격으로 환급하여야 함



### 3.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7/7)

#### CBAM 인증서 거래금액

- 관련 당국은 CBAM 인증서를 EU-ETS 배출권의 주간 거래종가 평균의 가격에 수입자에게 판매함  
(2021년 7월 19일 기준 톤당 약 52 유로 = 약 7만원)
- 각 CBAM 인증서는 고유번호를 가지며 가격과 판매날짜와 함께 CBAM 등록국에 등록됨
- CBAM 가격은 매주 첫번째 영업일에 유럽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 발표되며 다음 영업일로부터 다음 주 첫번째 영업일에 거래되는 인증서에 적용됨
- 수입자는 CBAM 등록국에 충분한 인증서를 확보하여 해당 인증서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며 매 분기말 기본 배출량의 80% 이상의 인증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CBAM 인증서 재구매 및 취소

- 관련 당국은 수입자가 충분한 인증서가 없는 경우 1달 이내로 구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제출 이후 여분의 CBAM 인증서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CBAM 인증서가 제출된 해의 6월 30일까지 관련 당국에 재구매를 요청할 수 있음
- 재구매 가능한 인증서는 수입자가 전년도에 구매한 인증서의 1/3를 넘을 수 없음
- 재구매 가격은 수입자가 해당 인증서를 구매한 가격임
- 관련 당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에 구매 이후 각 계정에 남은 CBAM 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음

#### CBAM 인증서 미제출 과태료

- 수입자가 5월 31일까지 CBAM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는 1 톤소배출량당 EUR 140(약 19만원)임



## 4. 탄소국경조정제도 부속서 주요 내용 (1/6)

### ANNEX I.

#### 탄소국경세 부과대상

-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업종은 탄소국경세 부과대상에 해당됨
- 탄소국경세 부과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수입제품은 EU 복합품목분류표 (CN: Combined Nomenclature)에 따라 8단위 CN code로 명시
- 회사는 CN 코드 확인을 통해 취급하는 수입제품이 탄소국경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가능

\* 복합품목분류표(CN: Combined Nomenclature)

- 복합품목분류표는 EU에서 사용되는 관세율표
- 복합품목분류표는 8자리의 분류체계로 되어 있으며, 6자리까지는 HS에 의거한 국제분류이며, 7과 8자리는 독자적인 세부분류로 구성됨
- 복합품목분류표는 Regulation(EEC 2658/87)의 부속서(ANNEX I)에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갱신되어 관보를 통해 공개됨

- 1차적으로 철강의 모든 하위산업과 철강 제품 일부 품목이 포함되어 철강산업에 집중됨
- 해당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하류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List of goods and greenhouse gases

업종	CN Code	관련 온실가스
시멘트	2523 10 00 – Cement clinkers	이산화탄소
	2523 21 00 – White Portland cement, whether or not artificially coloured	
	2523 29 00 – Other Portland cement	
	2523 90 00 – Other hydraulic cements	
전력	2716 00 00 – Electrical energy	이산화탄소
비료	2808 00 00 – Nitric acid; sulphonitric acids	이산화탄소 및 아산화질소
	...	
철강	7301 – Sheet piling of iron or steel, whether or not drilled, punched or made from assembled elements; welded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steel	이산화탄소
	...	
알루미늄	7601 – Unwrought aluminium	이산화탄소 및 과불화탄소
	...	



## 4. 탄소국경조정제도 부속서 주요 내용 (2/6)

### ANNEX II.

#### 탄소국경세가 면제되는 국가 및 지역

- ANNEX II에서는 탄소국경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스위스와 같이 이미 ETS(EU의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였거나 EU와 연계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은 탄소국경세가 면제됨

#### #1. 물품의 원산지가 다음 국가에 해당되는 경우 탄소국경세 비적용

- 아이슬란드
- 리히텐슈타인
- 노르웨이
- 스위스

#### #2. 물품의 원산지가 다음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탄소국경세 비적용

- 독일 일부 지역(뷔징겐, 헬골란트)
- 이탈리아 일부 지역 (리비뇨, 캄피오네디탈리아)
- 스페인 일부 지역(세우타, 멜리야)



## 4. 탄소국경조정제도 부속서 주요 내용 (3/6)

### ANNEX III.

#### 탄소배출량 계산방법

- 탄소국경세 부과대상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야 하며, 인증서 가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됨
- 당초 계획과 달리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전기를 생산 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간접배출량)은 탄소배출량 계산에서 제외됨

⋮

#### 직접배출량만 계산

### #1. 단순 재화

- 단순 재화<sup>\*</sup>의 실제 탄소배출량은 직접배출량<sup>\*\*</sup>을 기준으로 산정
- 1톤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직접 배출량) / (상품 생산량)

$$SEE_g = \frac{AttrEMg}{ALg}$$

\* 단순재화는 원자재, 복합재화는 단순재화 등 원자재를 통해 생산된 반제품을 의미

\*\* 직접배출량(direct emissions) : 생산자가 직접 통제하는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을 의미  
(본 규정 Article 3 Definitions)

### #2. 복합 재화

- 복합 재화의 실제 탄소배출량은 직접배출량 및 투입된 모든 원자재들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 1톤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직접배출량 + 원자재 탄소배출량) / (상품 생산량)

$$SEE_g = \frac{AttrEMg+EEinpmat}{ALg}$$

- 원자재 탄소배출량 ( $EEinpmat$ ) =  $\sum_{i=1}^n M_i \cdot s_i$
- $M_i$  :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원자재 양
- $s_i$  : 해당 원자재의 실제 탄소배출량



## 4. 탄소국경조정제도 부속서 주요 내용 (4/6)

### ANNEX III.

#### 탄소배출량 계산방법, 계속

- 단순재화 및 복합재화의 실제 직접배출량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 기본 탄소배출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산정방식은 i) 전력 외 제품과 ii) 전력으로 구분됨

#### #3. 기본 탄소배출량 (default Values)

##### ① 전력 외 제품

- 기본 탄소배출량은 수출국별 평균 배출 정도(average emission intensity of each exporting country)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Mark-up\*에 따라 증가 가능
- 상기 평균 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제일 많은 10%의 공장(EU)에서 배출한 평균값을 적용

\* 추후 이행법률에 따라 결정될 예정

##### ② 전력

- 기본 탄소배출량은 제3국(EU 외) 또는 제3국 집단 등의 정보를 통해 산정한 평균 CO<sub>2</sub> emission factor\*를 기준으로 결정
- 상기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EU 내 전력 생산에 따른 평균 CO<sub>2</sub> emission factor를 기준으로 결정
- 수입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탄소배출량(default values) 대신 실제 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으나, 별도 검증업체를 통해 인증절차가 필요

\* CO<sub>2</sub> emission factor : 총 전력생산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 기본 탄소배출량(default values):

Secondary data를 통해 계산될 수 있는 배출량을 의미  
(본 규정 Article 3 Definitions)



## 4. 탄소국경조정제도 부속서 주요 내용 (5/6)

### ANNEX IV.

#### 탄소배출량 산정 관련 정보 보관

- 수입자는 탄소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며, 독립된 검증업체(accredited verifiers)와 관련 당국이 CBAM 신고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관되어야 함

#### #1.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보관해야 하는 정보

##### ① 수입자 정보

- 수입자명
- 관련 당국이 부여한 등록번호(unique identifier)

##### ②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

- 상품 유형 및 수량
- 원산지
-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 배출량(default values)

#### #2. 수입물품의 실제 배출량과 관련된 정보

- 수입물품이 생산된 공장에 대한 정보
- 수입물품이 생산된 공장 운영자의 연락처
- 부속서 V에 의거 수입물품의 탄소배출량에 관한 검증보고서
- 수입물품의 탄소배출량 정보(specific embedded emissions)



## 4. 탄소국경조정제도 부속서 주요 내용 (6/6)

### ANNEX V.

#### 검증 보고서의 내용 및 검증 원칙

- 수입자는 탄소배출량 산정과 관련하여 독립된 검증업체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함
- 독립된 검증업체는 다음의 검증원칙을 준수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1. 검증원칙

- 검증자는 전문가로서의 의심을 가지고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 검증보고서에 잘못된 진술이 없고 부속문서 Ⅲ의 계산방법에 대한 중요한 오류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하는 경우에만 보고서가 검증되고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 공장을 방문할 수 없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증자는 의무적으로 공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 검증자는 잘못된 진술 또는 불일치성이 중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8조에 따라 채택된 시행법에 의한 임계치(threshold)을 사용해야 한다.
- 임계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검증자는 그 불일치가 개별적으로나 통합적으로나 그 크기 및 성격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에도,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을 사용해야 한다.

#### #2. 검증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 수입물품이 생산된 공장에 대한 정보, 공장 운영자의 연락처
- 검증대상기간, 검증자의 이름 및 연락처 등
- 공장 방문 날짜 또는 공장 방문을 수행하지 않는 이유
- 검증대상기간 동안 생산된 수입물품의 수량
- 검증대상기간 동안 공장의 직접 배출량(direct emissions) 등
- 복합재화의 경우 투입 원자료의 수량 및 탄소배출량 등
- 검증자 의견서
- 검증과정에서 발견되었지만 수정되지 않은 중요한 오류에 대한 정보 등



## 5.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 영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취지가 탄소 누출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 만큼 한국의 탄소 가격 정책이 EU 정책에 미달하는 경우 1차 적용 산업을 포함한 EU향 수출 비중이 높은 많은 산업이 향후 탄소국경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산업 측면

- 현재 탄소국경조정 적용 산업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부문임
- 탄소국경조정은 EU ETS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EU ETS는 탄소집약적산업(석유화학, 금속, 석회, 유리, 도자기, 펄프 등)에 적용되므로 탄소국경조정 역시 1차적인 산업에서 향후 다른 탄소집약적산업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현황을 고려할 때,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탄소국경조정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1차 적용 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CBAM Compliance 대응을 위한 배출데이터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공정효율화, 수출품목 변화, EU 내 생산기지 이전 등 Global Value Chain의 재편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탄소국경조정 해당 위험 高



### 국가 정책 측면

- 현재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음 (2017년 7유로에서 현재 58유로)
- EU의 규제 강화에 따른 탄소배출권 수요증가는 EU 탄소 배출권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한국의 경우 탄소가격제도 중 탄소배출권 거래제만 시행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가격은 약 2~3만원으로 EU ETS 가격보다 현저히 낮음
- 따라서, 국가정책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전환기간동안 국내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EU 교역상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CBAM의 WTO 합치성에 대한 통상법적 대응을 수행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탄소세의 도입, ETS 거래 촉진 등 EU 탈탄소 정책과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탈탄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Contacts

김 흥 현, Partner

Global Tax Services

+82 2 709 3320

[hong-hyeon.kim@pwc.com](mailto:hong-hyeon.kim@pwc.com)

이 윤 석, Partner

Global Tax Services

+82 2 3781 2374

[yoon-sok.lee@pwc.com](mailto:yoon-sok.lee@pwc.com)

성 시 준, Director

Global Tax Services

+82 2 709 0284

[si-joon.x.sung@pwc.com](mailto:si-joon.x.sung@pwc.com)

[www.samil.com](http://www.samil.com)

S/N: 2107T-RP-012

© 2021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